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6. 26. 김용민의원 · 박은정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6. 7. 1.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7. 8.) 상정·제안설

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0.)

상정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3.)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5.)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6.)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2.)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3.)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4.)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6. 7. 29.)

상정·대체토론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7. 29.)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용민의원 · 박은정의원)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

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